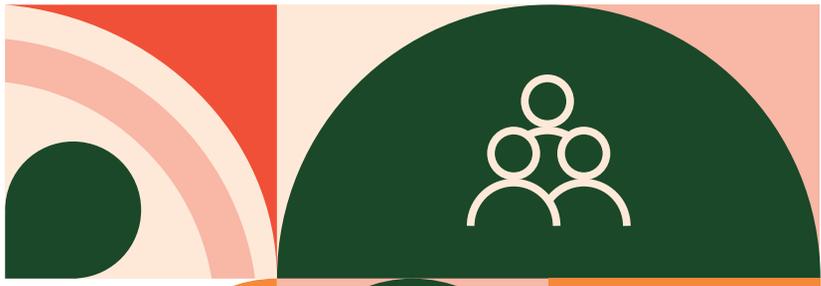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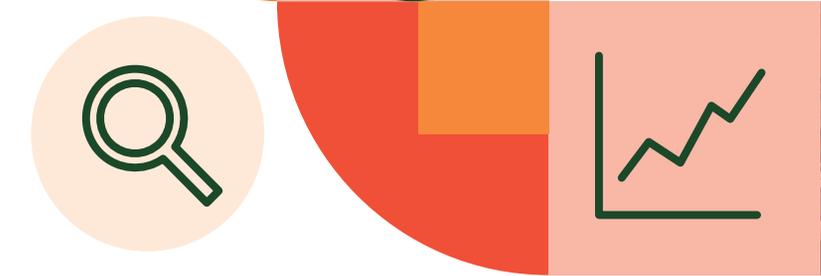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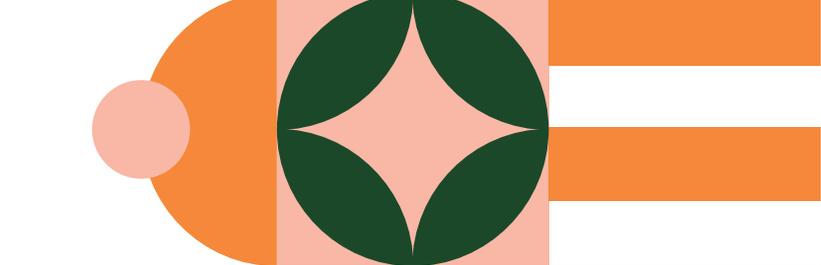
20
24



자 치 계 획 결 과 보 고 서



역 촌 동 주 민 자 치 회



2024년도
역촌동 주민자치회

자 치 계 획
결과보고서

목 차

인사말

역촌동 주민자치회 회장 홍상만	04
역촌동 동장 옥유관	05

2024 역촌동 주민자치회 일반개요

01 역촌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07
02 역촌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현황	08
03 역촌동 주민자치회 운영 경과	09

2024 역촌동 주민자치회 감사 및 회계현황

01 역촌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	12
02 역촌동 주민자치회 회계현황	19



2024 역촌동 주민자치회 사업별 보고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행복공간 조성	22
탄소제로 일곱 개의 약속	24
아시나요 아나바다	26
역촌 골목에 꽃을	27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28
이웃과 함께 과거로의 여행	29
나도 집수리 전문가	30
배움을 나누는 기쁨	31
안심마을 개선 프로젝트	32
봉산 침사지 안전펜스 설치	33
2024 주민자치회 기타 활동 사진	34

2024 역촌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보고

2024 주민총회 개최 공고	37
2025 동 참여예산 주민총회 상정 의제	38
2025 동 참여예산 주민총회 투표 결과	39

별첨자료

별첨1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42
별첨2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49

| 인사말 |



역촌동 주민자치회 회장 **홍상만**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주민자치회장 홍상만입니다.

2023년 8월 회장에 선출되고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50여 분의 우리 자치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기에 미련도 없습니다.

2024년은 우리 주민자치회에 새로운 도전과제들로 가득했던 한 해였습니다. 누리공간이라는 새로운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개소했고 이화여대와 15회차에 걸쳐 1동 1대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8월에는 우리 역촌 주민 300여 분이 참석한 주민총회가 한여름 열기를 덮었고 참여예산 동특화사업인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행복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어린이 사생대회와 인문특강, 원데이클래스 등에서 수많은 역촌동 주민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더욱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2019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시작해 벌써 6년을 맞이한 우리 역촌동 주민자치회는 이제 새로운 위원과 새로운 길을 모색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과 성찰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6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자치회 활동을 마감하며 부족했던 점 너그럽게 살펴봐주시고 그동안 함께해 주신 주민자치위원님들, 주민 여러분, 역촌동 행정 공무원 여러분께 모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모두가 아끼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역촌동 주민자치회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역촌동 주민자치회장 **홍상만**



역촌동 동장 옥 유 관

역촌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촌동장 옥유관입니다.

한해를 돌이켜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선거로 주민자치 활동에 제한이 있어 동특화 사업 등 참여예산사업 추진이 하반기에 많이 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위원님들과 분과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작년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10개의 사업을 잘 마무리해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역촌동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발전과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참으로 열심히 활동해주셨습니다.

1월, 인조별서유기비 누리공간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6월, 남원시 금지면 자매결연지와 협약을 추진하고, 새로운 시선으로 의제를 발굴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8월, 제 6회 역촌동 주민총회 및 ESG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더 나은 역촌동을 위한 의제를 선정하였습니다.

10월, 제1회 인조별서유기비 어린이 사생대회를 열어 다양한 체험부스 운영 등 성공리에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1월, 강화도에서 역촌동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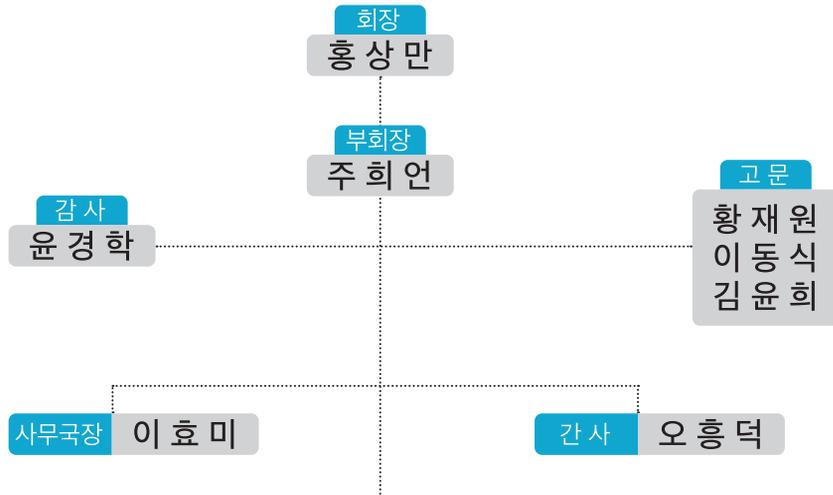
이제 주민자치회 3기가 마무리되면서 2025년 주민자치회 4기가 출범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역촌동을 위해 봉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올해 총회에서 선정된 6개의 사업뿐만 아니라 내년에 추진될 다양한 행사에도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역촌동 동장 옥 유 관

2024 역촌동 주민자치회

일반 개요





건강분과

백승자, 윤미숙, 송천식, 오덕수
오수복, 이덕력, 이순임, 이진용
차화석

맥가이버분과

백소영, 이정숙, 김수연, 박상현,
신태진, 정봉걸

배움나눔분과

마천숙, 권성연, 김지호, 이양수
이형자, 정영숙, 황연하

역사문화분과

박민선, 장순복, 강동욱, 김을수
김정란, 윤경학, 이형자, 정판정
주명희

자원순환분과

유혜경, 노경임, 김은아, 김종환
김태희, 문선미, 박주호, 신재교
이봉흠, 이춘희, 조정현

환경분과

홍청자, 이승분, 강정순, 김명화
김은숙, 손지영, 주희언

역촌동 주민자치회는 민관협력을 통해,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문화를 기반으로 개 선하고 싶은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논의, 결정,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촌동 주민을 대표 하는 기구입니다.

▣ 주민자치회 위원 : 52명 (2024. 12. 20. 기준)

(단위: 명)

단체	개인	남	여	40대 미만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분과원
20	32	16	36	0	10	11	17	14	1

▣ 주민자치회 임원진 현황 (2024. 12. 20. 기준)

회 장	부회장	감 사	사무국장	간 사	분 과 장
홍상만	주희연	윤경학	이호미	오흥덕	백승자, 마천숙, 백소영 박민선, 유혜경, 홍청자

▣ 주민자치회 분과 구성 현황 (2024. 12. 20. 기준)

분 과 명	분과장	위 원	주요업무
건강분과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백승자	윤미숙, 송천식, 오덕수, 오수복 이덕력, 이순임, 이진용, 차화석	건강 걷기, 맷돌체조, 치매 교육 등으로 주민 건강 증진에 도움
배움나눔분과 (배움을 나누는 기쁨)	마천숙	권성연, 김지호, 김형자, 이양수 정영숙, 황연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생활 용품을 만들어 기부함으로써 지역 화합 도모
맥가이버분과 (나도 집수리 전문가)	백소영	이정숙, 김수연, 박상현, 신태진 정봉걸	경제적, 시간적으로 유용한 간단한 집수리 방법에 대해 배움
역사문화분과 (이웃과 함께 과거로의 여행)	박민선	장순복, 강동욱, 김을수, 김정란 윤경학, 이형자, 정판정, 주명희 (분과원 홍주리)	주민들과 함께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며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배움
자원순환분과 (아시나요 아나바다)	유혜경	노경임, 김은아, 김종환, 김태희 문선미, 박주호, 신재교, 이봉흠 이춘희, 조정현	월 2회 문화 공연 및 버룩장터를 개설 하여 자원순환을 도모함
환경분과 (역촌골목에 꽃을)	홍청자	이승분, 강정순, 김명화, 김은숙 손지영, 주희연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화단을 조성하여 환경개선을 도모

운영일시	운영내용	세부 운영 내용
2024. 1.	2023년 마무리 및 사업계획 2024년 분과 구성 및 OT	2023년 사업정산 및 마무리 / 감사실시 2024년 사업계획 공유 및 논의
2024. 3. 25.	의제발굴 마을돌러보기실시	1차 마을 둘러보기
2024. 4. 4.~6.	불광천 벚꽃축제 부스운영	장소 : 불광천변 활동 : (인조별서)누리 작은 도서관 홍보, 체험부스 운영
2024. 4. 12.	누리작은 도서관 개관	장소 :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14길
2024. 4. 18.~8. 24.	1동 1대학 시작 (15회차)	장소 : 역촌동 주민센터 2층, 이화여대 수강인원 : 40명
2024. 5. 14.	주민 의견 나눔의 장 실시	장소 : 역촌동 주민센터 2층
2024. 5. 17.	주민자치 연합 워크숍	장소 : 봉산, 앵봉산 대상 : 은평구 16개동 주민자치위원, 간사, 사무국장
2024. 5. 21.	봉산 침사지 안전 펜스 설치 (시설 사업) 사업 설명회	정기회의
2024. 6. 5.	자매결연지 협약식 및 의제발굴 워크숍	장소 : 남원시 금지면 행정 복지 센터
2024. 6. 7.	의제 부서검토 신청 참여예산 사업 실행	
2024. 7.	세척개정	◇ 1차 회의 - 6. 11. ◇ 2차 회의 - 6. 20. ◇ 3차 회의 - 7. 2. 세척 개정 : 7월 정기회의 의결
2024. 7. 18.	재활용 분리수거장 방문	장소 : 경기도 하남시 유니온파크 활동 : 재활용 분리 방법 교육
2024. 7. 25.	봉산 침사지 안전 펜스 설치 (시설 사업)	봉산 침사지 안전펜스 설치 완료 시공일시 : 24. 5. ~24. 7.
2024. 8. 7.~14.	사전투표	장소 : 역촌동 주민센터 및 거점
2024. 8. 24.	◆1동 1대학 수료식	장소 : 역촌초등학교 실내 체육관
	◆역촌동 주민총회	장소 : 역촌초등학교 실내 체육관
	◆역촌동 ESG 페스티벌 행사	장소 : 역촌초등학교 운동장 내용 : 벚룩장터 및 체험부스 운영

운영일시	운영내용	세부 운영 내용
2024. 10. 3.~5.	은평누리축제 참가	장소 : 불광천변 활동: (인조별서) 누리 작은 도서관 홍보, 누리공방 홍보 체험부스 운영
2024. 10. 26.	인조별서 어린이 사생대회	장소 : 인조별서 유기비 어린이 공원 대상 : 유아 15명 / 초등 저학년 15명 / 초등 고학년 15명
2024. 10. 21.~11. 29.	동특화 사업 실시 (누리공간)	장소 : 인조별서 누리 작은 도서관 수업과목 - 실록으로 알아보는 조선 500년 (4회차 수업) - 내 사주는 내가 보자! 명리학 강좌 (4회차 수업) - 북콘서트, "아이가 방문을 닫기 시작 했습니다." (1회차) - 헌책 예술이 되다-팝업북 만들기 (5회차 수업) - 그림책 독서 코칭 지도사 과정 (5회차 수업)
2024. 11. 4.	역량강화 워크숍	장소 : 강화도 전등사 활동 : 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친목도모
2024. 11. 6.	은평 1동 1대학	장소 : 은평구청 은평홀 활동 : 전동 일동 일대학 소개, 질의, 응답
2024. 11. 25.~29.	동특화 사업 실시 (행복공간)	원데이클래스 장소 : 행복공간 수업과목 - 월 : 우드 트레이 만들기 / 화 : 테라리움 만들기 - 수 : 천연 허브팩 만들기 / 목 : 건강 수지침 배우기 - 금 : 생화 리스 만들기
2024. 12. 2.~6.	참여예산 사업 실행	장소 : 역촌동 주민센터 2층 활동 : 친환경 소재 생활 소품 꾸미기, 천연가습 테라리움 꾸미기 재생종이 활용 바구니 만들기
2024. 12. 12.	역량강화 피자 만들기	장소 : 역촌동 주민센터 3층 조리실 활동 : 역노인복지회관, 역촌파출소, 역촌119 안전센터(소방서), 주민센터 나눔
2024. 12. 13.	은평구 16개동 합동 성과 공유회	장소 : 은평구청 5층 은평홀 활동 : 주민자치회 영상시청 우수사례 발표 및 성과공유회 포스트 잇 이벤트 주민자치회 영상시청 및 사진 촬영
2024. 12. 17.	2024 역촌동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및 송년회	장소 : 주민센터 2층, 양심소 활동 : 한해 소감 발표, 1년 활동 영상 시청, 감사패 전달
2024. 12. 26.	겨울철 마을 둘러보기 및 시설점검	장소 : 역촌동 진흥로 7길 일대 활동 : 경사로 위험지역 시찰

2024 역촌동 주민자치회

감사 및 회계현황



감사 개요

근 거	- 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 역촌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3장 재정 및 예산관리, 제37조(사업비 관리), 제38조(재정), 제39조(특별회비), 제40조(회계 및 지출), 제41조(회계연도)에 근거함.
감사일시	2024. 12. 27. (금) / 오전 10시
감사장소	역촌동 주민센터 3층 주민자치회 회의실
감 사	윤경학
참 석 자	회장 : 홍상만, 사무국장 : 이효미, 간사 : 오흥덕
업무협조	담당 행정 주무관 : 김하영

감사 내용

1. 주민자치회 조직과 운영 실태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정기 회의 (월 1회, 셋째주 화)	2024년 1월~12월 중 : 3기 정기회의 - 1월 ~ 12월 (12회 개최) *1월은 행정에서 진행=임원 선출, 간사 선정
2	운영진 회의 (월 1회, 둘째주 화)	2024년 2월~12월 중 : 3기 운영진 회의 - 2월 ~ 12월 (11회 개최) 정기 회의 전 사전 운영진 회의를 통해 정기 회의 의결 사항 선정 및 공유 사업활동을 공유하는 원활한 소통창구 역할을 함.
3	민관협력 회의 (월1회 이상)	행정과의 공유사항과 협력사항을 논의하며 원활한 자치 사업을 진행함.
4	사무국 회의 (필요시 상시진행)	사무국 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 운영되었으며 필요시 상시 진행함으로 운영진 회의 및 정기 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데 도움을 줌
5	자치회관 운영	1분기에는 7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3분기에는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반을 정원미달로 인해 폐강하고 가정요리를 개설 하였으며 4분기에는 강사의 건강상 이유로 사군자 수업을 폐강하였음

2. 주민자치회 예결산 및 회계상태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여부	적 정
2	지출서류(결의서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적 정
3	주민자치회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적 정
4	회계장부 비치 및 서류	적 정
5	근무시간에 따른 간사활동비 지급의 여부 (기타소득세 납부여부)	적 정

3. 주민자치회 실행사업(은평구 참여예산) 현황 점검

연번	감사내용	진행상황	감사결과
1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공간조성	진행 종료	확 인
2	봉산 침사지 안전 펜스 설치	진행 종료	확 인
3	안심마을 개선 프로젝트	진행 종료	확 인
4	아시나요 아나바다	진행 종료	확 인
5	탄소제로 일곱 개의 약속	진행 종료	확 인
6	역촌 골목에 꽃을	진행 종료	확 인
7	이웃과 함께하는 과거로의 여행	진행 종료	확 인
8	배움을 나누는 기쁨	진행 종료	확 인
9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진행 종료	확 인
10	나도 집수리 전문가	진행 종료	확 인

4. 역촌동 주민자치회 2024년 활동현황

연번	감사내용	일 시	감사결과
1	의제 발굴 마을 둘러보기 실시	24. 03. 25 (월)	확 인
2	벚꽃축제(누리작은도서관,누리공방 홍보)	24. 04. 05 (금)	확 인
3	인조별서 누리작은 도서관 개관	24. 04. 12 (금)	확 인
4	일동 일대학 시작	24. 04. 18 (목)	확 인
5	의제발굴 공론장	24. 05. 14 (화)	확 인
6	의제발굴 워크숍 및 자매 결연지 협약식	24. 06. 05 (수)	확 인
7	총회준비위원회 결성	24. 07. 04 (목)	확 인
8	총회, ESG페스티벌 개최	24. 08. 24 (토)	확 인
9	누리 작은 도서관 홍보 프로그램 실시	24. 10. 21 (월) ~ 11. 19 (화)	확 인
10	역량강화워크숍 실시(강화도 보문사, 자연 휴양림)	24. 11. 04 (월)	확 인
11	행복공간 홍보(원데이 프로그램 실시)	24. 11. 25 (월) ~ 11. 29 (금)	확 인
12	“탄소제로 일곱 개의 약속” 프로그램 실시	24. 12. 02 (월) ~ 12. 06 (금)	확 인
13	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피자 만들어 나눔	24. 12. 12 (목)	확 인
14	은평구 16개동 연합 성과공유회 실시	24. 12. 13 (금)	확 인
15	역촌동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실시	24. 12. 17 (화)	확 인

5. 주민자치회 서류감사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여부	- 집행자금 모두 통장계좌 입금 - 지출성 경비는 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확인
2	주민자치회 명의의 전용통장 개설 및 사용 여부	우리은행 응암동지점 개설
3	주민자치회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목적 외로 임의사용 사항 없음
4	주요 회계장부 비치 및 통장잔액 일치 여부	일치함 : 총계정원장
5	수입원, 지출원 지정 여부, 신용보증보험 가입 여부	사무국장, 간사 가입 확인
6	지출서류(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미비서류 시정 요청
7	소득세, 주민세의 원천징수 이행 여부	- 소득세 : 국세청 납부 → 행정 - 지방세 : 서울시 납부 → 행정
8	근무시간에 따른 사무국장 활동비, 간사활동비 지급의 여부(기타소득세 납부여부)	‘사무국장 활동 기록부, 간사 활동 기록부’ 확인 → 근무시간에 따라 월 200만원, 100만원-정당지급
9	세무서 고유번호증 보관관리	비치 有
10	직인의 보관관리	비치 有
11	주민자치회 통장 관리	비치 有
12	주민자치회 위·해촉 사임 대장	비치 有 (행정)
13	연 1회 재물조사 실시 여부, 조사표 부착 여부	자산취득 물품 확인
14	자치회관 수입 등 유료 프로그램의 수입 누락 계상 여부, 영수증 발급의 적정성 확인	행정 보관
15	2기 역촌동 주민자치회 회비통장	은평신협협동조합 응암역지점 개설

6. 서울형 주민자치회 회계업무 공통서류 17개 확인

연 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2	정기회의 안건지 및 회의록	○
3	지출결의서	○
4	총계정원장	○
5	주민세균등분 9개 사업 회의록	○
6	감사보고서	○
7	운영진 회의록 및 안건지	○
8	민관협력 회의록 및 안건지	○
9	비품대장	○
10	주민자치위원 명부	○
11	간사 활동 일지	○
12	직인사용 대장	○
13	법 령 (조례, 운영세칙)	○
14	주민총회 관련 서류	○
15	수발신 문서철	○
16	내부 문서철	필요시 작성
17	업무 인수인계서	필요시 작성

7. 감사 총평

회의록 및 지출 결의서 등

모든 서류가 정확하고 깔끔하게 정리됨.

분과 참석인원 사진, 명부, 싸인이 정리됨.

사무국 직원들의 각별한 수고에 감사드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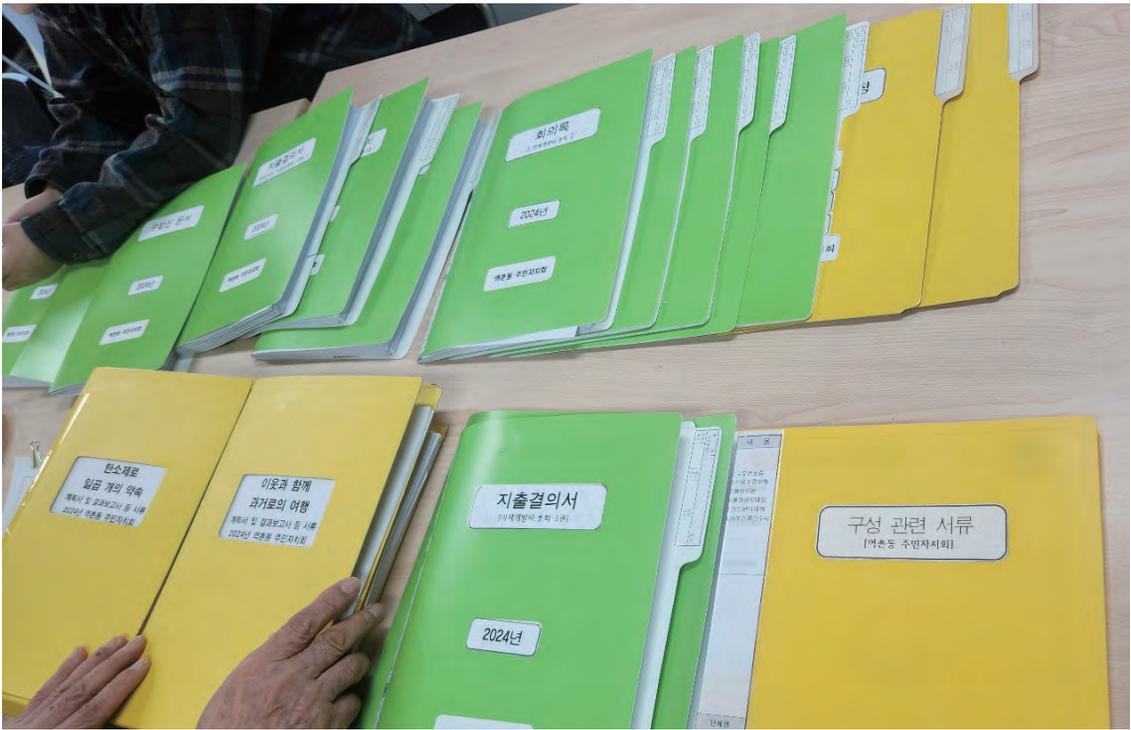
내년에도 잘해 가길 바랍니다.

2024년 12월 27일

역촌동 주민자치회 감사 윤 경 학 (서명 생략)

은 평 구 청 장 귀 중

8. 감사 진행사진



1. 보조금, 의제개발비, 사무국장 활동비, 간사 활동비, 구참여예산, 축제

○ 보조금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추진)

예산과목		산출근거	예산액 (원)	잔액 (원)
세부사업	통계액		4,250,000	408,230
소 계			4,250,000	
사무실 운영 주민자치회 사업·활동 홍보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 사무용품 구입 ○ 위원 모집 홍보비	1,060,000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348,000	
	행사운영비	○ 워크숍, 역량강화 교육	1,570,000	
분과 구성 및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 식비 8,000원×19명×1회 =152,000원 ○ 다과비 4,000원×56명×5회=1,120,000원	1,272,000	

○ 의제개발비 (의제발굴 및 주민총회 운영)

예산과목		산출근거	예산액 (원)	잔액 (원)
사업명	통계목	세부내용	12,350,000	
주민총회 개최, 운영 성과 공유회	사무관리비	○ 사무용품 등	1,500,000	65,680
	행사운영비	○ 영상 제작 ○ 홍보물품 제작 - 전단지 - 포스터, 초대장 제작 - 리플렛 제작 - 현수막 ○ 사전투표 운영 - 투표용지 ○ 총회 운영 - 기념품 - 결과보고서 제작 - 공간대여 - 사업 배너	7,170,000	
	행사실비 지원금	○ 총회 준비 위원회 회의 등 식비 8,000원×20명×23회=3,680,000	3,680,000	

○ 사무국장 간사 활동비

사업명	추진기간	예산액	집행금액	잔액
사무국장 활동비	1월 ~ 12월	24,000,000	24,000,000	0
간사활동비	1월 ~ 12월	14,400,000	14,400,000	0

○ 실행사업(구 참여예산 동 지역사업)

사업구분	사업명	예산액	집행금액	잔액
총사업비				11,617,000
참여예산 사업	봉산침사지 안전펜스 설치	15,000,000	15,000,000	0
	안심마을 개선 프로젝트	15,000,000	15,000,000	0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행복공간	30,000,000	25,423,910	4,576,090
	아시나요 아나바다	5,000,000	5,000,000	0
	탄소제로 일곱 개의 약속	10,000,000	5,893,720	4,106,280
	역촌 골목에 꽃을	5,000,000	4,940,070	59,930
	이웃과 함께 과거로의 여행	5,000,000	4,754,200	245,800
	배움을 나누는 기쁨	5,000,000	4,999,550	450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5,000,000	3,696,610	1,303,390
	나도 집수리 전문가	5,000,000	3,674,940	1,325,060

2024 역촌동 주민자치회

사업별 보고



진행	주민자치회 사무국, 동특화 사업 실행팀 홍상만, 주희언, 이효미, 오흥덕, 강정순, 권성연, 김명화, 노경임, 박민선, 백소영, 유혜경, 이승분, 장순복
사업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촌동 행복공간(연서로3나길 12, 지하)• 역촌동 인조별서유기비 누리공간(연서로14길 8-8)
활동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공간, 누리공간 홍보부스 운영(26명) : 2024. 4. 4. ~ 4. 5.• 누리공간 옥상 텃밭 조성(9명) : 2024. 4.• 누리작은도서관 도캉스 프로그램(56명) : 2024. 7. 29. ~ 8. 14.• 누리공간, 인조별서유기비 홍보부스 운영(21명) : 2024. 10. 5.• 누리작은도서관 역사-문화 특강 : 2024. 10. 21. ~ 11. 26. - 4종, 각 4~5회, 총 17회, 60명 참여• 제1회 인조별서유기비 어린이 사생대회(48명) : 2024. 10. 26.• 누리작은도서관 북 콘서트(20명) : 2024. 10. 31.• 인조별서유기비 누리작은도서관 홍보(11명) : 2024. 11. 2.• 행복공간 원데이클래스 운영 : 2024. 11. 25. ~ 11. 29. - 5종, 각 2회, 총 10회, 134명 참여• 인조별서 누리작은도서관<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 실록으로 알아보는 조선 500년 (4강)- 화 : 내 사주는 내가 보자 (명리학 강좌 4강)- 수 : 아이가 방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북콘서트 1강)- 수 : 헌책, 예술이 되다 (팝업북 만들기 4강)- 금 : 그림책 독서코칭지도사 과정 (지도사과정 5강)• 인조유기비 어린이 공원 : 어린이 사생대회 (유아,초등저학년,초등고학년)• 행복공간 원데이 클래스<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 우드트레이 만들기 - 화 : 테라리움 만들기- 수 : 천연허브팩 만들기 - 목 : 건강 수지침 배우기- 금 : 생화 리스 만들기
활동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공간과 누리공간에서 주민들이 직접 방문해 교육받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수 기획하여 공간 홍보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함• 프로그램 진행 후 만족도 조사 결과 교육장 환경(86점), 프로그램 진행 전반(97점)에서 '매우 만족'으로 나타남



진행

주민자치회 사무국, 환경사업 실행팀

홍상만, 주희언, 이효미, 오흥덕, 노경임, 유혜경, 백소영, 이승분, 홍청자

활동내역

- 하남 유니온파크 견학(29명) : 2024. 7. 18.
- ESG 페스티벌 부스 운영 : 2024. 8. 24.
 - 천연염색 체험(106명), 부채 만들기 체험(248명)
- 누리작은도서관 옥상 텃밭 관리(9명) : 2024. 9. 11.
- 사생대회 체험 부스 운영 : 2024. 10. 26.
 - 천연염색 체험(66명), 부채 만들기 체험(58명), 핀버튼 만들기 체험
- 아시나요 아나바다 벼룩장터 내 체험부스 운영 : 2024. 11. 2.
 - 부채 만들기 체험(38명)
- 친환경, 에너지 절약, 자원재생 교육 진행 : 2024. 12. 2. ~ 12. 6.
 - (1회) 친환경 소재 생활용품 꾸미기(앞치마) : 24명
 - (2회) 천연가습 테라리움 만들기 : 25명
 - (3회) 재생종이 활용 바구니 만들기 : 25명

활동실적

- 주민 대상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교육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프로그램, 견학 등을 운영하여 경각심을 상기하고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을 공유함.

탄소중립

7개의 약속!

2024 은평구 참여예산 역촌동 지역사업

역촌동 주민자치회

다섯번째 약속! 친환경



12월 2일 오전 10시~12시
친환경 소재 생활용품 꾸미기 (앞치마)

여섯번째 약속! 에너지절약



12월 2일 오후 2시~4시
천연가습 테라리움 만들기

일곱번째 약속! 자원재생



12월 6일 오전 10시~12시
재생종이 활용 바구니 만들기

신청

11월 27일 까지 문자메세지 접수
(1인 1개 가능)
010-3572-6684(자치회 사무국)

28일 추첨 후 개별 연락(각 25명)
역촌동 주민 우선 선정

| 수강료 : 무료 | 수업장소 : 역촌동 주민센터 2층 강의실 |





활동분과

자원순환분과 유혜경(분과장), 노경임(총무)

김은아, 김종환, 김태희, 문선미, 박주호, 신재교, 이봉흠, 이춘희, 조정현

활동내역

• 아시나요 아나바다 벼룩장터 추진 : 2024. 5. 18. ~ 11. 2.

- 총 7회, 누적 139팀 참여

• 장터 내 각설이 공연(총 3회) : 2024. 9. 7. ~ 11. 2.

활동실적

• 역촌동 주민센터 앞마당에서 회당 평균 20팀 정도 참여하였으며, 자매결연지 남원시 금지면에서도 농산물 직거래로 벼룩장터에 참여하는 등 활발히 추진하였음

• 역촌동 주민센터 앞마당은 장소가 협소하여 25년도 사업 추진 시 응암역 교통섬 공간사용 협조가 필요함



활동분과	환경분과 흥청자(분과장), 이승분(총무) 강정순, 김명화, 김은숙, 손지영, 주희언
활동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반기 사업 실행 : 2024. 4. 22. ~ 5. 21.<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14개소에 24개 화분 설치 및 화단에 식재• 하반기 사업 실행 : 2024. 10. 9. ~ 10. 11.<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반기 기식재된 14개소 중 4개소의 화분 재정비, 6개소 추가 설치• 총 20개소 : 개소별 활동가 지정, 매월 2~3회 관리 지속
활동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환경 및 보행 환경 개선을 통해 환경 의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식재된 꽃나뭇을 무단으로 뽑아가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관리상 문제가 있음• 개소별 활동가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주민자치위원들이 수시로 화분을 정비하고 관리하고자 함



활동분과

건강분과 백승자(분과장), 윤미숙(총무)

송천식, 오덕수, 오수복, 이덕력, 이순임, 이진용, 차화석

활동내역

- 맷돌 체조 사업 실시 : 2024. 4. 23. ~ 11. 26 (총 20회)
▶ 연인원 428명 참여
- 건강 걷기 사업 실시 : 2024. 4. 25. ~ 11. 14 (총 14회)
▶ 연인원 188명 참여
- 치매 예방 교육 실시 : 2024. 7. 24. ~ 7. 31 (총 2회)
▶ 연인원 59명 참여

활동실적

- 맷돌체조 만족도조사 결과 응답자 21명 모두가 유연성 기르기, 면역력 강화 등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으며 추후에도 맷돌체조에 참여하고 싶다고 답했음. 우천 취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3명)도 있었음.
- 건강 걷기 사업은 쓰레기 줍기도 병행하여 환경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주민들의 기초체력 단련과 소통의 장 형성에 도움을 주었음.



활동분과

역사문화분과 박민선(분과장), 장순복(총무)
강동욱, 김을수, 김정란, 윤경학, 이형자, 정판정, 주명희

활동내역

- 경북궁 : 2024. 5. 18. (40명 참여)
 - 국립중앙박물관, 독립문 : 2024. 6. 1. (38명 참여)
 - 전쟁기념관 : 2024. 6. 15. (40명 참여)
 - 국립민속박물관 : 2024. 6. 29. (27명 참여)
 - 유진박물관 : 2024. 7. 5. (12명) / 2024. 7. 26. (16명 참여)
 - 한옥박물관 : 2024. 8. 8. (21명) / 2024. 8. 20. (22명 참여)
 - 이말산 : 2024. 9. 6. (13명 참여)
 - 누리작은도서관 : 2024. 10. 12. (20명) / 2024. 10. 19. (14명 참여)
 - 덕수궁 : 2024. 10. 18. (9명 참여)
- 총 12회, 연인원 272명 참여

활동실적

- 해설사가 동행하여 탐방을 진행하여서 실질적으로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초등학생과 학부모, 일반주민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다양한 세대에 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감.



활동분과	맥가이버분과 백소영(분과장), 이정숙(총무) 김수연, 박상현, 신태진, 정봉걸
활동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반기 사업 실행 : 2024. 5. 2. ~ 7. 8. (총 8회)<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인원 111명 참여• 하반기 사업 실행 : 2024. 11. 18. ~ 11. 21. (총 4회)<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인원 43명 참여
활동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간단한 집수리 방법을 실습 위주로 교육하여 경제적, 시간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줌• 만족도조사 결과 목공, 미싱, 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소품 만들기 등 집에서 활용가능한 생활 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었음



활동분과

배움나눔분과 마천숙(분과장), 권성연(총무),
김지호, 김형자, 이양수, 정영숙, 황연하

활동내역

- 배움을 나누는 기쁨 1기 : 2024. 5. 23. ~ 6. 27. (총 5회)
▶ 14명 참여
- 배움을 나누는 기쁨 2기 추진 : 2024. 7. 4. ~ 8. 1. (총 5회)
▶ 14명 참여
- 배움을 나누는 기쁨 3기 추진 : 2024. 8. 29. ~ 9. 26. (총 5회)
▶ 20명 참여
- 배움을 나누는 기쁨 4기 추진 : 2024. 10. 10. ~ 11. 7. (총 5회)
▶ 23명 참여
- 너음 목도리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 2024. 11. 14. (1회)
▶ 22명 참여

- 연인원 93명 참여

- 제작 물품 223개(123세트) 나눔 실시 : 2024. 11. 25. ~ 12. 16.

활동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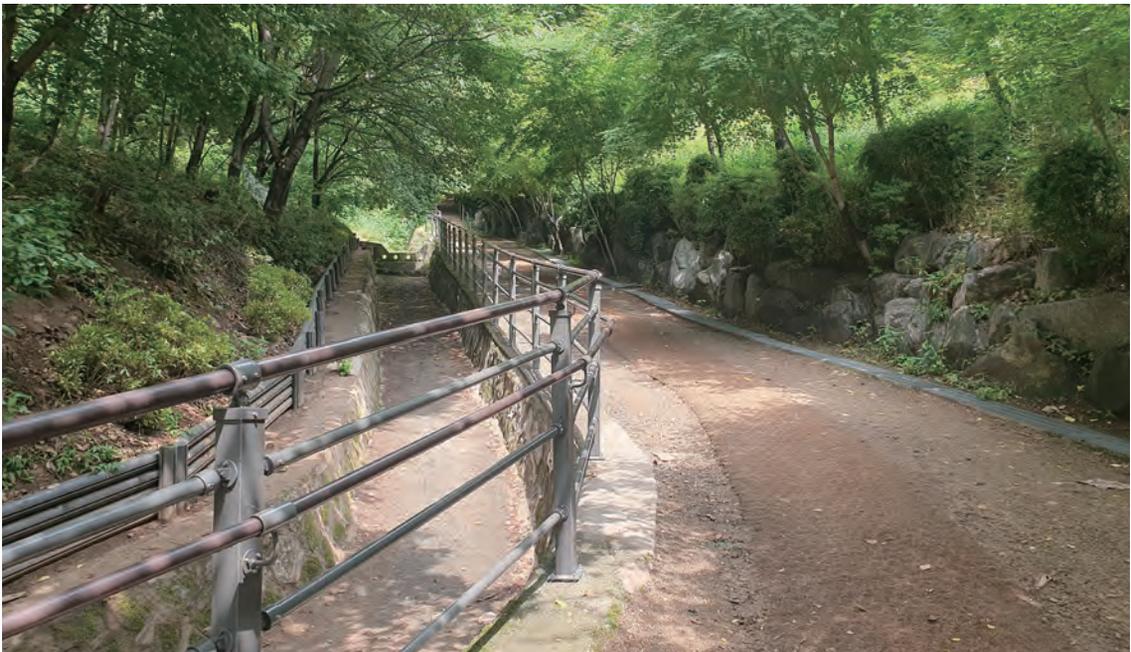
- 자원봉사 참여자를 모집하여 크로스 가방, 안경 지갑, 너음 목도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만든 물품은 1:1 안부확인대상자,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나눔을 실천하여 지역 화합을 도모함.



운영관리	주민자치회 사무국
사업내용	• 안심마을 일대 벽화거리를 조성해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 조성
사업대상	은평구 진흥로7길 일대 (안심마을)
사업기간	2024. 9. ~ 12.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추진회의 및 업자 미팅 진행 : 2024. 9. ~ 10.• 벽화 시안 점검 회의 : 2024. 11. 13.• 주민 동의서 취합 : 2024. 12. 2. ~ 12. 4.• 벽화 보수 용역 계약 체결(수의계약) : 2024. 12. 5.• 벽화 보수 과업 진행 : 2024. 12. 9. ~ 12. 18 - 벽 8면 작업 및 참여예산사업 안내판 설치
활동실적	• 벽화 색이 바래고 콘크리트 벽면이 갈라져 삭막하고 어두운 분위기의 안심마을을 밝은 색상의 벽화 조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을 만들고 다채로운 볼거리 및 일상 속 활력 제공



운영관리	주민자치회 사무국
사업내용	• 봉산 등산로 입구 일대 침사지에 안전펜스 설치
사업대상	역촌동 산31-1 일대(서북병원 뒤)
사업기간	2024. 1. ~ 7.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조사 : 2025. 1. ~ 4.• 계획수립, 물품 구매 : 2024. 5.• 주민설명회 개최(1차) : 2024. 5. 21.• 주민설명회 개최(2차) : 2024. 6. 18.• 물품 설치 : 2024. 6. ~ 7.
활동실적	• 서북병원 뒤편 침사지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통행객 안전 확보



2024년 주민자치회 기타 활동 사진



1동 1대학



워크샵



자매결연지 방문



누리공간 개소



연합워크샵



구참여예산 총회



2024 역촌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보고



2024년 역촌동 주민총회 개최 공고

제6회 역촌동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역촌동 주민이 직접 발굴한 사업을 투표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정하고 결과를 공유하여 2025년 역촌동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고자 함.

1. 주민총회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26조
- 일 시: 2024. 8. 24.(토) 10:00
- 장 소: 역촌초등학교 체육관
- 보고 안건
 - 2024년 역촌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보고
 - 2024년 역촌동 주민자치회 10개 실행사업 진행 상황 보고
- 승인 안건
 - 2025년 은평구 참여예산 동(洞)지역 사업 승인

※ 의결 정족수: 218명 이상(2024년 6월 30일 기준 역촌동 인구 4만 3,546명의 0.5%)

2. 주민총회 투표 자격

- 역촌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직장·단체·기관에서 활동하는 만 15세 이상 주민

3. 투표기간 및 방법

- 사전투표
 - 기 간: 2024. 8. 7.(수) 09:00 ~ 2024. 8. 14.(수) 18:00
 - 방 법
 - 사전 현장 투표 : 역촌동 주민센터, 역촌역, 용암역, 구산역, 푸르네 마트 등 거점투표소 5곳을 운영하며, 홍보자료 및 투표용지, 스티커 투표 방식
 - 사전 온라인 투표 : QR 코드 또는 구글 폼, 네이버 폼, 참여의 큰 숲 방식
 - 주민총회 당일 현장 투표 : 2024. 8. 24.(토) 10:00
- ※ 위 방법 중 1가지 방법으로 1회만 참여 가능

4. 결과보고

- 주민총회 개최 결과: 당일 현장 발표 및 한 달 이내 은평구청 및 동 게시판에 보고 및 사전투표자 문자 발송

5. 기타사항

- 위 내용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나, 주민총회 후 서울특별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필요시 『역촌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조정·결정한다.

6. 문의사항

- 역촌동 주민자치회 ☎ 02-351-5329 / 역촌동 주민센터 복지행정팀 ☎ 02-351-5304

2024년 7월 22일

역촌동 주민자치회장



2025년 동 참여예산 주민총회 상정 의제

분 야	연 번	사 업 명	예산액(원)
프로그램	1	수어교실	1,000만원
	2	야 나두 요리할 수 있어	1,000만원
	3	역촌 어르신 예뻐지는 순간	1,000만원
	4	전통을 잇자	1,000만원
	5	건강한 역촌	1,000만원
환 경	1	헌옷들의 변신	1,000만원
	2	아시나요 아나바다	1,000만원
	3	애들아, 자연이랑 놀자	1,000만원
동특화	1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행복공간 조성	1,000만원
시 설	1	친환경 액상 제설제 살포장치 설치	2000만원
	2	누리공간 LED현수막 설치	2000만원

제6회 역촌동 주민총회
2024. 8. 24.(토) 10시 역촌초 실내체육관
대상: 15세 이상 역촌동 거주 및 생활주민

2025 역촌동 마을의제 사전투표
일시: 2024년 8월 7일~14일
장소: 온라인 및 역촌동 주민센터 및 주요 거점 생활권주민자치회(총 15곳) 주민센터 내 주민투표함

ESG 페스티벌
12시 30분 역촌초 운동장
애니바다 베품장터 • 다양한 체험부스
이웃들기약거리장터 • 전통놀이 체험

역촌동 주민자치회

2024 6회 역촌동 주민총회
2024년 8월 24일(토) 10시 역촌초등학교 실내체육관

2025 마을의제 사전투표
일시: 2024년 8월 7일~14일
장소: 주민센터 및 주민투표함

ESG 페스티벌
12시 30분 역촌초 운동장

역촌동 주민자치회

2025년 역촌동 마을의제 주민이 손으로 직접 결정합니다!

마을의제 제1안: 주민자치회 운영비 증액	마을의제 제2안: 주민자치회 운영비 증액	마을의제 제3안: 주민자치회 운영비 증액	마을의제 제4안: 주민자치회 운영비 증액
예산액: 1,000,000원	예산액: 1,000,000원	예산액: 1,000,000원	예산액: 1,000,000원

역촌동 주민자치회

주인이 사업을 제안하고, 주민 손으로 직접 결정합니다!

2024 제6회 역촌동 주민총회 + ESG 페스티벌
2024. 8. 24.(토) 10시 역촌초등학교 실내체육관 · 참석 대상: 15세 이상 역촌동 거주 및 생활주민

더 나은 역촌을 고민하며 함께 살아가는 주민 한마당
12시 30분~16시 30분 역촌초등학교 운동장
• 애니바다 베품장터 • 친환경 체험부스
• 이웃들기약거리장터 • 전통놀이 체험

역촌동 주민자치회

2025년 동 참여예산 주민총회 투표 결과

분 야	연번	사 업 명	투 표 수	예산액(원)
사전투표 : 704 현장투표 : 185 무효 : 25			914	7,000만원
프로그램	1	역촌 어르신 예배지는 순간	432	1,000만원
	2	건강한 역촌	671	1,000만원
환 경	1	헌옷들의 변신	574	1,000만원
	2	아시나요 아나바다	749	1,000만원
동특화	1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행복공간 조성	1067	1,000만원
시 설	1	친환경 액상 제설제 살포장치 설치	667	2,000만원

역촌동 주민자치회 공고 제 2024-03호

2024년 제6회 역촌동 주민총회 결과 공고

2025년 자치계획 상정 의제에 대한 제6회 역촌동 주민총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민총회 개최 개요

- 운영방식 : 대면 참석 (속의 공론장 포함)
- 투표방법 : 찾아가는 사전투표, 주민총회 현장투표
- 투표기간 : 1) 사전투표 : 2024. 8. 7.(수) ~ 8. 14.(수)
2) 주민총회 현장 투표 : 2024. 8. 24.(토)
- 대 상 : 역촌동 거주 주민(투표권: 만 15세 이상 주민, 생활 주민)
- 참여인원 : 1,094명(사전투표 928명, 현장투표 166명)

2. 주민총회 투표결과 (2025년 의제 6건 승인)

구 분	사 업 명	사 전	현 장	합 계	비율	순 위
프로그램	건강한 역촌	568표	102표	670	(61.2%)	1위
	역촌 어르신 예배지는 순간	368표	64표	432	(39.5%)	2위
환 경	아시나요, 아나바다	635표	114표	749	(68.5%)	1위
	헌 옷들의 변신	485표	89표	574	(52.5%)	2위
동특화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주민 공간	906표	161표	1,067	동의 (97.5%)	승인
시 설	친환경 액상 제설제 살포 장치 설치	580표	87표	667	(61.0%)	1위

3. 주민총회 사진






○ 주 최 : 역촌동 주민자치회(☎ 02-351-5329) ○ 협 조 : 역촌동 주민센터(☎02-351-5304)

2024. 8. 26.

역촌동 주민자치회장





2024 역촌동 주민총회



이모저모



2024 역촌동 주민자치회

별첨 자료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정) 2013.09.26 조례 제962호
(전부개정) 2018.09.27 조례 제1231호
(일부개정) 2019.07.18 조례 제1275호
(일부개정) 2020.07.09 조례 제1351호
(전부개정) 2021.12.09 조례 제148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자치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 시설과 그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종교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의 설치

제4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〇〇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업무
6.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와 연계가 필요한 업무
7.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정원) 위원회의 정원은 50명 내외로 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7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위원회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자 2명 이내
 2. 관내 직능·교육·문화·예술·그 밖의 지역단체 추천자 3명 이내
- ③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선정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정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 ⑤ 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② 위원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위원 선정 전 6시간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주민자치학교 이수의 유효기간은 임기 내로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9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선정관리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제6항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 추첨하고, 각 호별 예비자를 순위를 정하여 공개 추첨한다.

1. 정원의 100분의 60이상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정원의 100분의 40이하는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 ③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40대 이하가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선정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천된 사람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제4항의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⑥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자가 없으면 제2항에 준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결원의 경우 운영세칙에 따라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가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 ⑦ 동장은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그 위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⑧ 해당 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다만, 고문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⑨ 그 밖에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추천 없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은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연임하는 위원은 임기 중 주민자치회 교육과정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정한다.

제11조(위원의 대우) ① 위원과 분과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에게는 은평구 지역소식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지역신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제18조에 해당하는 회의 및 활동 참석
 3.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 ②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위원이 제8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2.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 경우
3.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각종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다하지 않은 경우

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그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다만,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사임, 사고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자치회장 및 부회장을 재선출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전임 회장 및 부회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2명 이내로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인을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 또는 호선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의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8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 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8조(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다만, 정기회의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 또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회의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주민총회 개최 여부 및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자치계획의 결정
3. 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세환원사업의 제안, 선정
4. 그 밖의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한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자치협의회) ①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자치계획

제21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여야 한다.

③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의 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에서 보고 및 결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전달해야 한다.

⑤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⑥ 자치계획 실행과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 및 기념품을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다.

제22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협의 및 수탁업무 추진계획
3. 자치회관 운영계획
4. 분과별 사업계획
5. 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세환원사업 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6장 자치회관

제23조(설치 등) ① 자치회관은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동별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다만, 갈현제1동과 응암제1동은 ○○동문화의집으로 한다.

제24조(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6조(운영)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

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30조에 의하여 징수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경쟁력 유도와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발표대회 및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의 운영비와 시상금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우수 자치회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상할 수 있다.

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해당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강사)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

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의한 이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별표2와 같다.

⑥ 사용료 등의 반환은 별표3와 같이 한다.

⑦ 제2항에 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3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3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

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3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공간 지원 및 그 밖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해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요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제8장 보 칙

제37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8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주민자치회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및 동 참여예산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새로이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 참여예산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및 재산 등을 승계한다.

제4조(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주민자치협의회로 본다.

제5조(자치회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전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치회관은 제23조에 따른 자치회관으로 본다.

[별첨2] 역촌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2019. 03. 07.	역촌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2019. 03. 11.	초안 검토 및 의견수렴	사무국 회의
2019. 03. 18.	운영세칙 검토 및 수정	사무국 회의
2019. 03. 20.	운영세칙 검토 및 수정	사무국 회의
2019. 03. 26.	운영세칙 안건 상정 의결	정기회의
2021. 03. 17.	역촌동 2기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검토 및 수정(1차)	운영회의
2021. 04. 05.	역촌동 2기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검토 및 수정(2차)	운영회의
2021. 04. 13.	임원회의 운영세칙 수정(3차)	임원회의
2021. 04. 15~16.	전체 공람(SNS)	
2021. 04. 20.	4차 수정안 : 전체 단톡을 통해 수정변경사항 의결 - 60명 중 54명 안건동의) - 회비 : 전체 위원 무기명 투표로 찬반 결정 - 47명 투표 참여 / 19명 찬성 ① 5,000원 결정	
2022. 03.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운영세칙 검토 및 수정	정기회의
2023. 02. 17	역촌동 3기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검토 및 수정(1차)	정책분과위원회
2023. 03. 06	역촌동 2기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수정(2차)	정책분과위원회
2023. 06. 20	운영세칙 의결 및 전체공람	정기회의
2023. 11. 21	운영세칙 의결 및 전체공람	정기회의
2024. 07.16.	운영세칙 의결 및 전체공람	정기회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0조(운영세칙) 규정에 따라 은평구 역촌동 주민자치회 운영 및 자치회관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역촌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란 역촌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지역에 필요한 사업발굴 및 실행, 성과공유의 과정까지 동 주민자치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임원”이란 주민자치회 회의체계에서 선출된 회장·부회장·감사를 말한다.
6. “운영진”이란 제5호의 임원·사무국장·간사·분과위원장(또는 분과총무)를 말한다.
7. “고문”이란 역촌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과 역촌동에 거주하는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을 말한다.
8. “자치회관”이란 조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그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9. “자치회 운영공간”이란 역서로3나길 12 지하 1층 2개호실 <행복공간>과 연서로14길 8-8 <인조별서 유기비 누리공간>을 말한다...

제3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역촌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4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역촌동 주민센터 내에 둔다.

제5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6조(운영원칙) ① 제5조 기본이념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원칙은 조례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3.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4. 주민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5. 주민 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6. 정치적·종교적·사적 이용 목적 배제
 7. 지역사회 봉사 및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모색
- ②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거주주민: 성명, 생활주민: 추천단체), 회의록, 재정 현황, 위·수탁 사업 등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항은 주민들의 요청시 공개

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행정사무의 위수탁 계약 체결시에 한한다.)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업무
6.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와 연계가 필요한 업무
7.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2장 주민자치회 위원

제8조(위원)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과 선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공고와 인적사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위원 중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위촉하되, 예비자가 없는 경우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 모집 절차에 따라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통해 해촉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무단 불참하는 경우
3. 주민자치회 임원과 위원인 사무국장, 간사를 제외한 주민자치회 위원이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분과 활동에 연속 3회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4. 범죄행위를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5. 청탁·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로 주민자치회의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6. 자치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7. 반복적으로 여러차례 고성·욕설 사용 등으로 회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8. 특정 위원을 사적인 감정으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 ② 제 ①항에 따라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시 운영진회의를 통해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해촉절차와 방법은 운영진회의에서 결정하되,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과반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촉한다.
- ③ 제 ①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임원·운영진 구성 및 임기)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두며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2명(단,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통합하여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 제①항이 규정하는 임원 외의 운영진 구성은 회장이 발의하여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로, 사무국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
 2. 분과별 위원장(또는, 총무) 각 1명.

제11조(운영진 선출) ①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및 감사는 자치위원 중에 선출하되, 2명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1인 출마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해당분과에 소속된 자치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2명 이상이 입후보한 경우는 무기명 투표에 따라 다수득표자가 분과장이 된다.

③ 사무국장·간사는 세칙 제19조, 제20조를 따른다

제12조(임원 선출관리위원회) ① 임원선출의 선정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임원 선출관리위원회(이하“선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전체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위원 중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 입후보자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2.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선출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의 후보 등록 및 정견발표, 투표방식 등의 일반적인 선거 기준에 따라야 하며, 투표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⑤ 선출관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3조(회장·부회장의 임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의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주민자치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 부재시 자치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감사의 임무) ① 감사는 주민자치회의의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회기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 ② 정기 및 수시 감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가 실시한 사업추진 내역
 2. 주민자치회 수입, 예산 지출 내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동내역 전반
- ③ 제2항 2호에 따른 예산 지출 내역의 대상은 주민자치회 보조금 예산으로 집행한 사업과 수익금·찬조금 집행 등에 한하며, 동 주민센터 일상경비 교부사업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시감사가 필요한 때에는 감사 시작 30일 전에 자치회장에게 감사기간을 알리고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진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진은 세칙 제23조에 따라 정기회의에서 해임할 수 있다. 단,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당사자에게는 1회 이상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진회의 또는 정기회의에 연속 3회 불참할 경우(단, 직계존비속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예외)
2.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이에 상응하는 범죄 행위를 범하였을 때
4.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인 또는 주민자치회의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5. 주민자치회 운영에 피해를 입히거나 방해 또는 임무 태만 등의 민원발생으로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사임) ① 임원 또는 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사임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서를 제출한 즉시 사임한 것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임원은 업무 인수인계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임한 사람은 사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7조(궐위와 후임선출) ① 자치회장 등 궐위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임자를 결정한다.

1. 자치회장 궐위 시 조례에 따라 자치부회장이 선임 자치회장 선출시까지 남은 임기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 한다.
2. 자치회장 또는 부회장 궐위 시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공석으로 둔다. 단, 후보등록 공고에 3회 이상 지원자가 없을시, 회장의 경우는 부회장이 남은 임기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고, 부회장의 경우는 공석으로 둘 수 있다.
3. 감사와 분과위원장 궐위 시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선출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② 궐위된 임원에 대한 신입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궐위로 인해 후임자로 선출된 경우도 이와 같다.

④ 회장과 부회장 모두 궐위시에는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까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업무 대행 수행자를 결정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 운영

제18조(사무국) 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와 자치회관 위수탁 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간사,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국을 지휘 감독하여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

④ 사무국은 실무 진행시 해당 내용을 주민자치회 운영진 또는 위원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전체 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역량강화 지원
2. 기록물 생산 및 보존
3. 예산, 회계 및 지출 실무
4. 정기회의, 분과회의 등 각종 회의 개최
5.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6. 주민자치회 사업 기획 및 실행 지원
7. 분과활동 활성화 및 운영 지원
8. 그 외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등

⑥ 사무국장·간사·자원봉사자 등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사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서를 제출한 즉시 사임한 것으로 한다.

제19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간사 및 자원봉사자의 보조를 받아 주민자치회 운영 실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 구 또는 해당 동에서 공개모집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심사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1.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자치회 예산 집행 및 사업 기획 등에 관한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

3. 주민과 소통하며 역촌동 주민자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 ③ 사무국장은 활동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활동기록부의 내용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사무국장은 임원진 및 운영진과 협의하여 역촌동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 처리하며, 업무상황을 종합하여 상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 ⑤ 해임 등의 사유로 궐위시에는 공개모집의 선정 절차에 따라 후임을 선출하고 남은 활동기간동안 사무국장직을 수행한다.

제19조의 2(심사위원회) ① 사무국장 선발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자치회장이 위촉한다. 단, 사무국장 선발 지원자는 제외한다.
 - 1. 주민자치회 위원 3인 이내
 - 2. 역촌동 행정공무원 2인 이내
-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자치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 ④ 심사위원회는 사무국장 선발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 ⑤ 사무국장 선발 후 주민자치회 주인을 받는다.

제20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은평구 주민 중에서 간사를 선임 또는 호선한다.

- ②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록 작성, 예산회계 출납 등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 ③ 간사는 활동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간사는 관련 회의의 회의록을 기록하되, 정기임시회의의 주요내용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 ⑤ 해임 등의 사유로 궐위시에 자치회장은 간사를 새로 선임 또는 호선하여 남은 활동기간 동안 주민자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과를 구성한다.

- ② 분과위원회는 조례 제17조 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일반 분과원의 임기는 당해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③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임원과 사무국장·간사를 제외한 모든 위원은 필수적으로 1개 이상의 분과에 소속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 ④ 주민의 의견과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분과를 구성한다.
- ⑤ 분과위원회와 분과원 수는 제한이 없으나 분과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5명 이상을 필수 구성으로 한다.
- ⑥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또는 분과총무)을 선출한다.
- ⑦ 분과위원장은 분과회의의 의장이 되며, 분과의 각종 활동 및 분과운영 전반을 총괄,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분과부위원장(또는 분과총무)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록 작성, 분과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 ⑧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분과원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며, 가입시 가입신청서를, 탈퇴시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과회의, 사업 활동 등에 연 5회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경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⑨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공동사업 및 해당분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역할을 수행한다.
- ⑩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별 사업 실행뿐만 아니라 OO동 전체 주민자치사업을 함께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⑪ 분과위원회는 위원이 아닌 일반 주민이 실행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회의·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 1. 정기회의
 - 2. 운영진회의
 - 3. 민관협력회의
 - 4. 분과회의
 - 5. 주민총회
- ② 사무국장(또는 간사) 제1항의 1호부터 3호까지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며, 각 분과는 제4호의 회의 종료 후 분과장이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3조(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전체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 제 ①항에 따른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영세칙 및 세칙시행에 필요한 부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2.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및 변경
 3. 주민총회 개최 및 의제 확정 등 관련된 사항
 4. 주민자치회 사업결산 및 감사 보고의 승인
 5. 위원의 위·해촉 요구, 임원진 선출, 간사 선임, 운영진 해임
 6.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안건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집행에 관한 사항
 8. 운영진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9. 수입·지출 내역을 포함한 자치회관의 운영결과보고의 승인
 10. 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안건 심의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분과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④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는 주민 누구나 참관 가능하다 단, 발언권은 갖지 않는다.
- ⑤ 임시회의는 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개최하며 운영세칙 제2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4조(운영진회의) ① 운영진회의는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개최한다.

-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운영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운영진회의는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분과위원장, 사무국장, 간사로 구성한다. 단 분과위원장 유고시, 분과부위원장(분과총무)이 출석할 수 있다.
- ④ 운영진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여 정기회의에 상정한다.
1. 정기회의에 부의할 사항
 2. 동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3.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정기회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회 운영 및 분과별 진행과정 공유, 상호 조정 및 협의

제25조(민관협력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

치활동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회의를 둔다.

- ② 민관협력회의는 동장, 팀장, 동 담당자,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간사, 사무국장 등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협력체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수시 또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동장 또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분과회의) ① 분과회의는 마을의제를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월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분과에서 결정한 사항은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운영진회의에 부의한다.
- ③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간사, 사무국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분과위원의 의무는 갖지 않는다.

제27조(주민공론장 및 성과공유회) ① 주민자치회는 의제 발굴 및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공론장을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론장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개최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자치회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③ 성과공유회는 매년 12월 정기회의와 함께 당해 년의 주민자치회 사업 정리 및 평가, 차년도 사업안내도 포함하여 진행한다.

제28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연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주민총회 개최 여부 및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주민총회는 개최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15세 이상의 주민(○○동 거주, 사업자, 단체소속 등 생활주민 포함)이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전체 주민의 0.5%(서면 투표 등 사전투표 포함) 이상으로 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위원회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조정 협의한 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한다.
- ④ 주민총회 개최 1개월 전부터 홍보, 설명회, 사전투표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 ⑤ 효율적인 주민총회 운영을 위하여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⑥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장 및 구성 인원, 업무분장, 역할, 운영기간 등을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여 운영한다.
- ⑦ 주민총회 개최 시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및 나이를 알 수 있는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다. 단, 온라인 주민총회 시 온라인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⑧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회장 명의로 소집한다.
- ⑨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을 보고 받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계획을 결정한다.
- ⑩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 입주자대표회의 방송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 ⑪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한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29조(회의 의결) ① 위원은 회장을 제외하고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회장은 가부동수의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자치계획 수립) ① 사무국장은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진회의에 보고한다.

- ② 운영진회의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 ③ 분과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3. 월별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6. 홍보 및 협업, 주민 참여 및 타 단체 협조사항 등

④ 주민자치회 및 구청이 주관하는 정책공유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⑤ 선정된 우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

업주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자치회관 및 자치회 운영공간

제31조(자치회관 운영) ① 자치회관 운영은 주민자치회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민들의 자치회관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③ 조례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3조의4까지 준용한다.

제32조(자치회 운영공간) ① 자치회관 외 행복공간, 누리공간 등의 자치회 운영공간의 운영은 주민자치회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사무국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민들의 인문, 취미, 예술 등의 함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관 등 주민활동 지원 통해 주민활동을 지원한다.

③ 개방 시간, 이용수칙, 공간 및 사무 위탁 등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5장 예산 및 문서관리

제33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교부 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 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재정)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수강료, 교부금, 수익금, 찬조금, 기탁물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료는 자치회관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2. 수익금은 자치회관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예산
3. 찬조금은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등이 후원한 예산
4.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

② 주민자치회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반드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보험료는 주민자치회 예산

에서 지출한다.

제35조(회계 및 지출) ① 제32조(재정)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예산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사무국이 관리하되, 매월 정기회의 시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한다.

② 회장은 주민총회 시 제32조(재정)에 규정된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결산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회의에 결산 보고 한다.

제37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직인)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한다.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직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을 새로 하거나 고치거나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사무국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 사무국은 직인 날인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사무의 인계) ① 임원, 자치위원 및 사무국장, 간사의 임기 만료, 사임 및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무의 진행사항과 관련 기록물을 정리하고 인수인계서와 함께 후임자 또는 해당 업무 대행자에게 인계하고 상호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는 추진중인 업무가 없거나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등이 없을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한다.

③ 인수인계 시점은 임기만료의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사임·해임 또는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40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위원 위·해촉·사임 대장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회의록
2. 주민자치회 직인대장(주민자치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직인)
3. 문서접수 및 발급 대장
4. 문서등록 대장
5. 각종 회계장부
6.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7.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③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제1조(시행) 본 세칙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승인을 받은 날(0000.00.00.)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구 분	단위	대 상	기준금액	비 고
사용료	1시간	50㎡미만	5,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료는 기본 1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매 30분 초과시 50%를 가산한다.
		50㎡이상 ~ 100㎡미만	7,500원	
		100㎡이상 ~ 150㎡미만	10,000원	
		150㎡이상 ~ 200㎡미만	12,500원	
		200㎡이상	15,000원	
수강료	월	10시간이하 프로그램	1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 재료비는 본인 부담 • 1인 1프로그램 • 하한금액은 기준금액의 20% 이내로 한다.
		20시간이하 프로그램	15,000원	
		30시간이하 프로그램	25,000원	
		30시간초과 프로그램	35,000원	
체 력 단련실	1인/월	체력단련실 설치 운영 등	3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동은 수강료로 징수 -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지 않는 동은 사용료로 징수 - 하한금액은 운동기구 및 부대시설, 시설노후 등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의 20% 이내로 한다.

[별표 2]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구 분	대 상	감면비율	비 고
사용료 및 수강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등록장애인 • 국가·공공기관 및 직능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회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 	100 퍼센트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개 이하 프로그램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외의 저소득자로 동장이 추천한 사람 • 65세 이상 또는 만18세 이하인 사람 	50 퍼센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 카드를 소지한 자 	20 퍼센트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 또는 13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국위선양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행사 	50 퍼센트	

[별표 3]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구 분	반 환 내 용	비 고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료의 반환규정을 준용한다. 	
수강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전액 반환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시일 이전 : 전액 반환 - 개시일 이후 : 일할계산하여 반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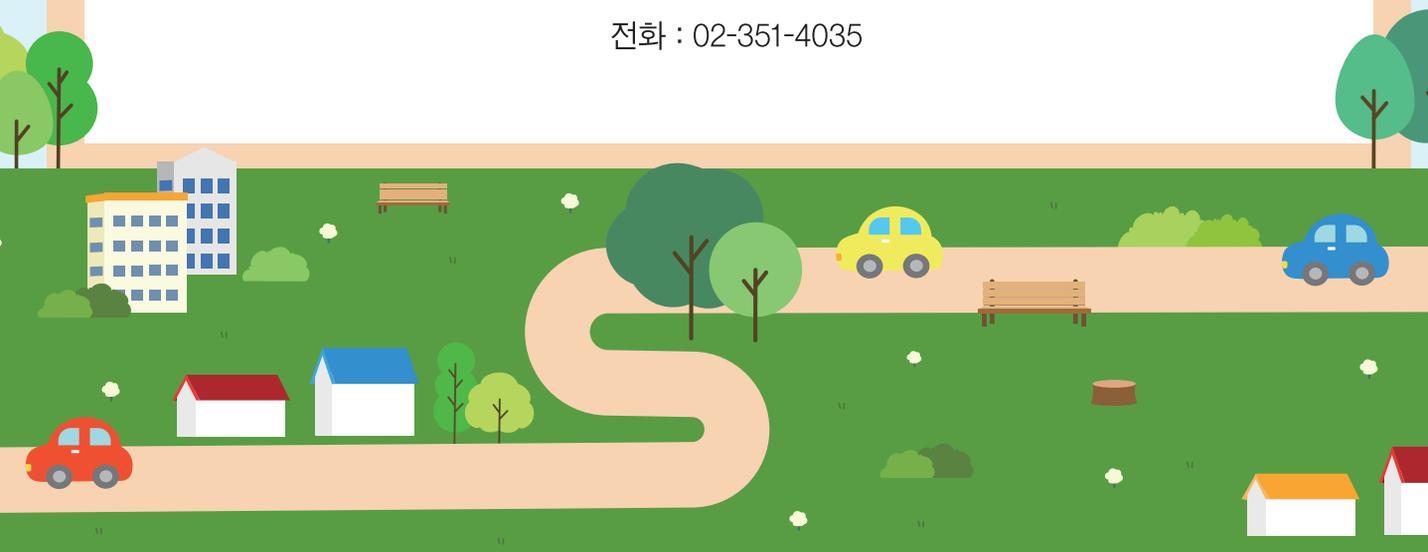
역촌동 주민자치회 분과원 모집

마을의 문제를 논의, 결정, 실행, 개선하고 싶거나,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며 봉사활동하고 싶은
역촌동 주민은 누구나
주민자치회 분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분과원이 되면 자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정기회의, 운영진회의, 분과회의에 참여하면서
봉사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신청

방문 : 역촌동 주민센터 3층 역촌동 주민자치회 사무국

전화 : 02-351-4035



2024년도 역촌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결과보고서

발행일 2024년 12월 30일
발행처 역촌동 주민자치회
발행인 홍 상 만
주 소 서울 은평구 연서로 59 (역촌동) 주민센터 3층
연락처 02-351-4035

 **역촌동 주민자치회**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59 역촌동 주민센터 3층 역촌동 주민자치회
Tel. 02-351-4035